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45-280
<https://doi.org/10.29212/mh.2018..109.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허태구*

1. 머리말
2. 병력의 확보
3. 軍糧의 공급
4. 맺음말

1. 머리말

병자호란의 일방적 전황과 참패는 군비 확충에 노력한 광해군과 국방을 방기한 인조라는 이분법적 통념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적 해석은 그것과 또 다른 사실을 전해주는 당대의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기록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와 군제사를 결합시킨 李泰鎭의 軍營制 성립에 관한 연구가 병자호란 군사사의 기초를 다진 이래,¹⁾ 인조대 군사력 강화 시도와 노력을 다양한 부면에서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미 학계에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²⁾

‘인조대 국방력 강화의 수준과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각 논자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인조대 집권 세력 또는 조선 조정이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병자호란 관련 군사사 분야의 선행 연구는 주로 전술 및 전략, 병기 제조와 축성, 군사조직과 방어체제의 변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반면, 군사력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① 병력의 확보와 조련, ② 군량의 확보와 운송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³⁾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선 조정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 국가의 군사력을 검토할 때, 체계적으

1) 李泰鎭, 제2장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제1장2절 「丁卯·丙子胡亂과 軍營體制의 발전」,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2) 崔孝軾, 「仁祖代의 國防施策」, 『東國史學』 19·20, 東國史學會, 1986; 권내현,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韓國史學報』 13, 고려사학회, 2002b; 盧永九, 「인조초~丙子胡亂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韓國史學報』 41, 고려사학회, 2010;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 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朝鮮時代史學報』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등.

3) 金鎔坤,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宣祖~顯宗 年間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權乃鉉, 「17세기 전반 平安道の 軍糧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0, 조선시대사학회, 2002a.

로 훈련되고 조직된 정예 병력의 존재 유무는 가장 기초적인 측량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건은 병기와 군량의 원활한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군대는 胃로 행군한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警句는 특히 군량 보급(혹은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말이다.⁴⁾ 병력과 군량의 부족은 임진왜란의 발발 이래 꾸준히 지적된 조선군의 약점이었지만, 종전 이후 40여 년이 지난 병자호란의 발발 시점까지도 이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養兵과 軍糧 공급의 문제가 정책 담당자의 수행 의지나 시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당시 조선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을 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공급이라는 사안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관련된 인조대 초반 조정의 논의와 대책을 정리하고, 아울러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병력의 확보

1623년 광해군의 ‘廢母殺弟’와 후금에 대한 和親 정책을 비판하며 仁祖反正을 일으킨 西人들은 향후의 대외정책을 ‘崇明排金’의 기조 아래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선

4) 마르틴 반 크레펠트,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4쪽.

5)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甲辰(14일)條 일곱 번째 기사와 여덟 번째 기사에 실린 反正敎書 참조. 전자는 인목대비, 후자는 인조의 이름으로 반포되었지만 모두 반정 1등 공신에 錄勳된 張維가 지은 것이다.

언과 달리, 인조정권은 후금에 공세적 태도를 유보하고, 광해군 대 후반의 유연한 외교노선-和議論에 근거를 둔 羈縻策-을 답습하였다고 한다.⁶⁾ 이에 대해서는 신생 인조정권이 내부 안정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라는 선행 연구의 해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이 ‘승명배금’의 의지를 후금에 관철시킬 군사적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 당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軍備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안이었지만, 그 실현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 전반의 역량이 뒷바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광해군 11년(1619) 3월 深河 전투는 당시 조선과 후금의 질적 군사력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⁷⁾ 派兵 자체를 반대한 광해군은 물론이고, 李爾瞻, 柳希奮, 朴弘耆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정 신료들도 애초에 조선군의 우세를 예견하여 파병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⁸⁾ 그들은 전력의 劣勢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對明義理를 지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파병을 주장하였

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53~373쪽 참조.

7) 심하전투를 포함하여 이 때 벌어진 명군과 후금군의 전투 전체를 중국 학계에서는 대개 ‘薩爾滸戰’, 일본 학계에서는 ‘サルフ戰’으로 부른다. 이때 1만여 명의 후금군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로 進攻하는 10만여 명의 명(8만 8천)·조선(1만 3천)·예허(2천) 연합군을 완파하였다. ‘심하전투’의 상세한 전황은 대한민국 육군대학譯, 『機動戰-사르호전』, 『軍事評論』 337호 부록, 1998, 191~203쪽 참조(原書는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明と清の決戰』, 原書房, 1972).

8) 『光海君日記』 권127, 광해군 10년 윤4월 壬午(24일) “臣 弘耆 希奮 尙毅 爾瞻 馨男 時言 挺 公亮 慶全 沖 惇 蓋國 晚 瓊 瑾 致績 盼等議…我國兵農不分 素無預養之卒 重以蕩殘之餘 瘡痍甫起 今若策疲乏軍 助戰天兵 則無益於征勦 有害於自守 而其他種種憂虞之端 臣等亦豈不知 然而以大體言之 則有父子之義 以私情言之 有必報之義 以此以彼 斷不可不爲應援 若徒思我勢之弱 以示不肯之色 而天朝責以大義 迫不得已 然後方爲赴援 則後至之責 似不得免 而他日脫有緩急 則將何面目 求救於天朝乎”; 『光海君日記』 권161, 광해군 13년 2월 癸丑(11일) 등.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한 『光海君日記』는 조선후기 太白山史庫에 소장되었던 中草本이다.

던 것이다.

인조반정 초기에도 후금을 배격하는 논의는 비등하였지만, 이를 군사적 조치로 실행하기에는 다음 실록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인용자: 이)元翼이 아뢰기를…“앞으로 奴賊을 방지하고 明軍[天兵]을 지원하는 일이 극히 난처합니다. 현재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었습니다. 반드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용도를 절약하고 民을 아끼며, 무릇 徭役과 관계된 일들도 民에게 짐 지우지 않음으로써 民力을 조금이라도 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百姓은 매우 신통한 존재라 그들로 하여금 明軍에게 보급하게 하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奴賊을 정벌하게 하더라도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인용자: 백성들이) 君臣의 大義는 모른다 하더라도 壬辰年의 再造한 은혜에는 모두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⁹⁾

영의정 이원익은 인조를 面對한 자리에서 ‘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民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類의 유교적 원칙¹⁰⁾에 입각한 발언을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후금에 대한 실질적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민심의 안정을 위해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는 군비 확충책과 兩立할 수 없었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조반정 초기 후금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한 방어책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조선군의 우세를 예견한 신료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都元帥 張晩을 비롯한 李适, 鄭忠信

9)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壬子(22일).

10) 『論語』,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11) 『宣祖實錄』 권193, 선조 38년 11월 癸酉(3일) “柳永慶曰 專爲防備 則民力傷矣 恐傷民力 則防備疎矣 臣百爾一思 兩全之策 而一未得焉”;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7월 乙未(7일) “上曰 軍務與安民 有如水火之不相濟 糧餉器械之措備 率皆貽害於民 況今懸磬之患方極 將何以爲措也”.

등의 경험 많은 武將들은 野戰에서의 정면대결보다 守城과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¹²⁾ 인조 자신도 후금군이 월등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군의 방어가 매우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였다.¹³⁾ 이와 같은 인조대 초반 조정의 분위기는 “(적이) 온다면 비록 韓信이 다시 살아나고 諸葛孔明이 다시 일어나다 해도 우리나라의 人心과 兵力으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며,¹⁴⁾ 후금과의 무력 충돌을 강력하게 만류하고 회피한 광해군의 판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鐵騎’로 지칭되었던 후금의 강력한 기마 전력에 비해, 조선군은 軍政의 문란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완비된 방어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광해군은 명에게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는 신료들에게 兵農이 분리되지 않아 조련된 정예 병력이 거의 없는 조선군은 오히려 明軍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¹⁵⁾ 명목상 주력군인 正軍은 평소에 훈련이 없는 상태였으며, 赴防時에도 代役을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⁶⁾ 임진왜란 이후 육성에 주력하였던 훈련도감의 軍兵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12)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酉(2일) “上御明光殿 引見都元帥張晚 晚曰…且賊之長技 在於馳突 我國兵勢 似難抵當 以我所長 攻其所短 則可以制勝 莫如據險而禦之”;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7월 辛卯(3일); 『仁祖實錄』 권5, 인조 2년 3월 戊辰(14일) 등.

13)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윤10월 辛亥(25일) “上書講大學於文政殿…上曰 伊賊行兵 非如我國 有事便發 其行甚疾 而在我邊備 如彼虛疎 近來多有設弊者 而未聞救弊之策 未知將何爲也”.

14) 『光海君日記』 권176, 광해군 14년 4월 辛巳(16일).

15) 『光海君日記』 권128, 광해군 10년 5월 壬辰(5일) “傳曰…我國兵力 果有分寸 可助天兵之勢 則雖掃境內, 荷戈執戈 爲王師前驅 不旋踵而死 少無所憾矣 第我軍兵無形之狀 聞於天下 予常心寒 而備局大提學 有若讞奴酋 而犁其庭者 予實未曉 以我疲兵 入討虎穴 不教之民 必先潰裂 到此尤得罪於天朝 將何兵而可禦長驅之鐵騎乎”.

16) 『光海君日記』 권39, 광해군 3년 3월 丁卯(27일).

채 賤한 使役에 동원되면서, 건장한 장졸들이 軍籍에서 빠지기도 모하여 헐벗고 굶주린 노약자들로 충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¹⁷⁾ 훈련도감 소속의 將官, 別武士, 禁軍別隊의 경우, 명색은 馬兵이었으나 소유한 말이 없어 騎射 훈련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¹⁸⁾ 게다가 위와 같이 각개 전투력이 떨어지는 병력을 통솔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武將들의 지휘 능력도 높지 않았다.¹⁹⁾

이러한 상황은 인조대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부득이 후금과의 군사적 대결을 가급적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묘호란이 수습된 지 얼마 안 된 인조 5년(1627) 7월, 李貴는 軍務 개혁의 筭子를 올리면서 조선군과 후금군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²⁰⁾ 이에 따르면 전투 의지, 전문성, 功守城戰 능력, 갑옷과 軍馬의 구비 여부, 포상 규정, 근접전 능력, 군량의 보급 방식, 軍馬의 내구성, 정보 수집 능력 등이 조선군의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심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李民奭 역시 후금에 대한 방어책으로 산성 수축, 군마 육성, 군사의 정예화, 변방 군사 육성, 무기의 정예화, 무예 장려를 건의하였다.²¹⁾ 양자의 지적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군이 군사력의 질적 측면에서 후금군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光海君日記』 권73, 광해군 5년 12월 丙申(13일).

18) 『光海君日記』 권106, 광해군 8년 8월 己未(21일).

19)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0월 壬辰(28일) “上曰 我國之人 兵書專不知 雖千人萬人 不過馳馬彎弓而已 將才則全無矣”;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酉(2일) “上御明光殿 引見都元帥申叔舟 晚曰 必得將才 可以禦敵 而武將無一人知兵者 只知以賂做官而已 此輩將焉用之” 등.

20) 李貴, 『李忠定公章疏』 권8, 『陳軍務書一劄』 丁卯七月初八日.

21) 李民奭, 『紫巖集』 권6, 雜著 『建州聞見錄』.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국방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확보 역시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은 군사력의 양적 측면에서도 후금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²²⁾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결과를 돌이켜 볼 때, 패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훈련된 병력이 변경과 내륙의 군사 거점에 배치되어 견실한 상비 전력을 유지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17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현되기 쉽지 않았다.

비록 축소 보고의 가능성은 있지만, 광해군 1년(1609) 1월 명나라 사신에게 알리려 한 京外諸邑 軍士의 총 수는 7만 6천 명에 불과하였다.²³⁾ 이 가운데 건주여진의 방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평안도, 황해도, 개성부 군사의 합계는 1만 9천 명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이들 중 국경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여러 거점에 분산·배치된 상태였으므로,²⁴⁾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軍勢를 불린 건주여진의 대규모 침입에 전과 같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2) 물론 병력의 총 수는 당연히 원정군인 후금(청)군보다 조선군이 많았지만, 이들을 대적하는 주요 戰場인 서북·경기 지역 방어거점의 병력 수만 놓고 보면 적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은 이와 같은 약점을 下三道의 병력 동원 등을 통해 보완하려 하였으나, 이동과 보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약점이 있었다.

23) 『光海君日記』 권15, 광해군 1년 4월 15일 丙寅 “兵曹京外諸邑軍士總數 京中五百名 開城府四百名 京畿四千八百名 忠清道一萬名 江原道三千名 黃海道八千名 全羅道一萬八千名 濟州三邑一千七百名 慶尙道七千名 平安道一萬六千名 咸鏡道七千名 合七萬六千四百名 天使接見時 如或有問 以此數對之”; 이 기사는 병조 군적에 기록된 正軍의 수를 파악한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조 36년(1630)경 이미 2,000여 명이 웃돌았던 훈련도감군의 병력이나 인조 11년(1633)경 9만 70여 명에 달했던 東伍軍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의 제읍 군사의 총 수도 실제 합하여 보면 7만 1천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이 내용은 正草本 『光海君日記』(정축산본)에 실리지 않았다.

24) 『光海君日記』 권14, 광해군 1년 3월 辛卯(10일).

正軍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광해군 10년(1618) ‘(병조) 軍籍에 등록된 騎兵과 步兵의 元數는 18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만 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상당수가 流亡으로 避役한 상태’라는 기록도 보인다.²⁵⁾ 서북 변경의 방어에 4~5만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심하전투 이전 실제 방어에 투입된 병력은 下三道의 赴防軍까지 포함하여 3만 정도였다.²⁶⁾ 이러한 병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北道 公私賤 노비들의 군대 편입을 장려하거나,²⁷⁾ 정원 외로 등록된 校生의 軍籍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민심의 반발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²⁸⁾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는 ‘廣取武科’(일명 萬科)를 시행하여 군사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를 出身軍官이라 하여 서북 변경의 방어에 의무적으로 1년 동안 복무하게 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²⁹⁾

인조반정 직후 都元帥 張晩은 인조를 접견한 자리에서 명과 연합하여 후금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의 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인조에게 보고하였다.³⁰⁾ 安州牧使 鄭忠信은 후금군의 총 병력을 9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면서 10여만의 조련된 精兵이 있어야 요동 수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 자리에 동석한 延安府使 南以興도 정충신과 함께 훈련

25) 『光海君日記』 권125, 광해군 10년 3월 庚申(1일) “右副承旨朴鼎吉啓曰…兵曹軍數 概聞平時則騎步兵元數十八萬 而通計奉足 幾至五十萬 今則兵厓六萬 其中多有絕戶流亡者 除各色軍 訓練都監哨 軍戶奉足竝萬餘名外 視平時 不及九分之一 良民逃役之弊 據此可知”.

26) 『光海君日記』 권135, 광해군 10년 12월 甲子(9일); 『光海君日記』 권144, 광해군 11년 9월 丙午(27일).

27) 『光海君日記』 권36, 광해군 2년 12월 甲午(23일).

28) 『光海君日記』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己未(10일).

29) 17세기 민과의 운영 실태와 폐단에 대해서는 심승구, 「조선 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163~187쪽 참조.

30)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未(12일).

된 정예 병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인조에게 강조하였다. 정묘호란 전후 조선이 파악한 동원 가능한 병력은 서북 지역을 포함하여 대략 10만 정도를 헤아렸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량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였다.³²⁾ 이처럼 인조대에도 잘 조련된 정예 병력의 부족을 인식하면서, 특히 서북 변경과 강화도·남한산성 등지의 군사 거점을 방어하는 병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軍役 기피로 인한 병역 자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전투력의 질적 저하라는 조선군의 고질적 문제는 인조대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인조 1년(1623) 8월 인조는 李适을 副元帥로 임명하여 평안북도 寧邊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후금 방어의重任을 담당하게 하였다.³³⁾ 그러나 이괄은 인조 2년(1624) 1월 22일에 起兵했다가 진압당함으로써 오히려 후금 방어의 주력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서북 지역의 戰力 손실은 결과적으로 정묘호란의 방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³⁴⁾ 1만 2천 명 남짓한 이괄군은 불과 20여 일만인 2월 10일 都城을 점령하였지만, 이 때는 이미 官軍의 귀순 권유로 인하여 반란군의 상당수

31) 『仁祖實錄』 권5, 인조 2년 3월 戊辰(14일) “忠信曰 兵馬精強 實難當之賊 其兵之多寡 雖未詳知 聞有八部大人之說 又有四百爲一哨之語 大約可至九萬餘矣…忠信對曰 我國本是無兵之國 雖良將 誰與爲戰 今若抄發十餘萬衆 教訓一二年 則遼東亦可以進取矣 何必區區於守禦乎”.

32)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5월 乙未(6일) “浚謙曰 我國西路戍兵 不滿三萬”; 『仁祖實錄』 권16, 인조 5년 4월 丙辰(20일) “上曰 軍兵元數 必得十餘萬然後 乃可分老弱而用之 江原道則一邑軍兵之數 或不過十餘 豈有此理乎…廷龜曰…聞虜兵在窟穴者 其數不滿十萬云 我國則兩西軍兵 合數萬餘名 三南合五六萬 則幾至十萬 但兵雖多 無糧則爲無用之軍 宜量軍糧 而定軍數也”.

33)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8월 乙亥(17일).

34) 이괄란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하였다. 노영구, 제2절 1편 「대후금 방어전략과 이괄의 난」, 『한국군사사⑦-조선후기 I』, 육군본부, 2012;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全北史學』 48, 전북사학회, 2016.

가 이탈한 상태였다.³⁵⁾ 도성 입성 후 다음날 鞍峴 전투에서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官軍이 대승함으로써 이괄의 난은 가까스로 진압되었다. 이상의 경과는 당시 조선군의 수도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조정은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扈衛廳과 御營廳의 병력을 각각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경기 일대의 병력을 재편하여 총 병력 2만 명 규모의 摠戎廳을 신설하였다.³⁶⁾ 이에 따라 인조 1년(1623) 6,500명 정도였던 수도권 일대의 방어 병력이 정묘호란 직전에는 4배 정도로 증원되어 2만 5천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괄란 이전 3만여 명에 달했던 헤아리던 서북 지역의 방어 병력은, 정묘호란 직전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1만 6천 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반란 이후 강화된 武將에 대한 감시, 즉 譏察은 서북 일대에 주둔한 병력의 조련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³⁷⁾ 기찰로 위촉된 무장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군사 훈련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이괄의 부하였던 韓明璉의 아들 韓濶이 후금으로도주함으로써³⁹⁾ 조선군 전력의 虛實과 방어책이 고스란히 후금에게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윤은 정묘호란시 姜弘立과 함께 후금군을 이끌고 들어왔다.⁴⁰⁾

방어 병력의 부족은 군사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도 있었

35) 『仁祖實錄』 권4, 인조 2년 1월 癸未(28일) “賊將柳舜懋 李胤緒 李愼 李珽等 自賊中逃還帥府 其所領軍兵四千餘人 皆潰散”.

36) 이하 서술한 이괄란 이후 조선의 군사력 증강 과정은 柳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29~33쪽 참조.

37) 『仁祖實錄』 권5, 인조 5년 3월 癸巳(26일) “李植曰…譏察之事 未知其果有 而南以興亦以譏察 不得一番合操云 豈不惜哉”.

38) 한명기, 2016, 앞의 논문, 115~118쪽 참조.

39) 『淸太祖實錄』 권9, 天命 10년 1월 癸亥(14일).

4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乙酉(17일).

지만, 30~40%에 육박한 노비 인구가 초래한 良人 인구의 부족, 士族들의 軍役 회피가 근본적 원인이었다.⁴¹⁾ 이 때문에 正軍과 奉足으로 대표되는 軍役의 구체적 임무가 軍籍에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농민들의 避役과 代立, 아울러 破産과 유랑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公私賤 인구의 과다와 이로 인한 병역 자원의 부족은 明君의 눈에도 쉽게 인지될 정도였으며,⁴²⁾ 조정의 君臣들도 이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⁴³⁾ 이러한 軍政의 모순은 궁극적으로 전투력 약화의 주 요인이 되었다.⁴⁴⁾

조선은 이미 浸漬왜란을 수행하면서 병력의 부족을 절감하였다. 軍役 자원을 확보하고 賦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戶口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평한 軍役의 부과를 위하여 號牌法 실시와 함께 軍籍을 정리하자는 방안이 선조대부터 해결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⁴⁵⁾ 그러나 행정력의 미비와 민간의

41) 이영훈, 「한국사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144쪽; 오중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99~204쪽.

42) 『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己亥(13일) “(인용자: 崔滉曰…中原見我國執供億之役者皆丁壯 而編行伍者皆老弱 謂曰丁壯者何不赴戰 而請兵於上國云 此言甚可愜也”

43)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丁酉(14일) “上敎政院曰 我國自來 武略不競 兵力單弱 蓋公私賤人 其數必過於軍丁 而名不登簽兵之籍 然公賤則猶能役於公家 至於私賤 則有司不敢問 爲國內一種人 此古今天下之所無也…備邊司回啓曰 我國士族之家 減獲以千百數 而官兵則日就削弱 此雖國俗流傳之舊 難可卒變 然簽名操鍊 不可少緩”

44) 『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己亥(13일) “(인용자: 崔滉曰…爲今計 無過於括軍也 中原見我國執供億之役者皆丁壯 而編行伍者皆老弱 謂曰 丁壯者何不赴戰 而請兵於上國云”;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丁酉(14일) “上敎政院曰 我國自來 武略不競 兵力單弱 蓋公私賤人 其數必過於軍丁 而名不登簽兵之籍 然公賤則猶能役於公家 至於私賤 則有司不敢問 爲國內一種人 此古今天下之所無也”; 『光海君日記』 권152, 광해군 12년 5월 戊子(11일) “備邊司啓曰…況公賤也 私賤也 此外士族之子 枝難於編伍者 其麗不億 而既不隸兵籍 又不服公田 其於國家兵農之政 了不相干者也 一切驅入於兵農之中 其勢未由 除此而必欲分兵農 則其不足之患 猶夫前也”.

45) 『宣祖實錄』 권96, 선조 31년 1월 庚子(14일).

반발을 우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⁴⁶⁾

광해군대 초반에도 李廷龜의 건의 이후⁴⁷⁾ 비변사 주도로 號牌法 실시가 추진되었다. 오랜 논란 끝에 광해군 4년(1612) 1월에야 호패 착용이 시행되었다.⁴⁸⁾ 호패법 실시로 軍籍에 누락되어 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병역 자원의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軍役 부담의 증가에 불만을 품은 각 계층의 반발로 인하여 결국 광해군 4년(1612) 7월에는 그 시행이 완전히 중지되기에 이른다.⁴⁹⁾ 호패법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였던 세력은 法制와 달리 사실상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고자 하였던 士族層이었다.⁵⁰⁾ 후일 광해군의 대외 정책에 반발하면서 심하 전투의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이이첨이 시행 과정에서의 民弊를 명분으로 호패법 실시에 반대하였던 모순적 행보 역시 흥미롭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조대 초반 호패법 추진 논의가 다시 부활하여 崔鳴吉, 李貴 등 대표적 主和論者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⁵²⁾ 반면 정계의 원로였던 이원익과 재야의 대표적 산림 金長生은 이이첨과 마찬가지로 ‘민심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끝까지 호패법 실시에 반대하였다. 정묘호란 직후 김장생은 주화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척화

46) 『宣祖實錄』 권103, 선조 31년 8월 乙丑(12일).

47) 『光海君日記』 권15, 광해군 1년 4월 乙卯(4일).

48) 『光海君日記』 권49, 광해군 4년 1월 己亥(4일).

49) 『光海君日記』 권55, 광해군 4년 7월 甲辰(12일).

50) 임진왜란 이후 士族層에 대한 充軍 정책과 이에 대한 반발은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442~459쪽 참조.

51) 『光海君日記』 권36, 광해군 2년 12월 戊戌(27일).

52) 인조대 호패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혜안, 2006, 191~195, 312~319쪽 참조.

론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었다.⁵³⁾ 특히 이때는 호패 법뿐만 아니라 軍籍의 정비, 量田 등의 문제도 같이 거론되면서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⁵⁴⁾

인조 4년(1626) 한양은 3월 1일까지 지방은 4월 1일까지 호패 착용을 마감한 결과,⁵⁵⁾ 男丁의 총수가 기존 103만여 명에서 226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⁵⁶⁾ 그동안 별다른 國役을 부담하지 않았던 閑丁 123만여 명이 호패를 착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避役을 목적으로 校案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 校生은 4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2/3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額外 교생이었다.⁵⁷⁾ 조정은 이들에게 『小學』과 『大學』의 구절을 암기하는 考講을 시행한 뒤 낙방한 자들에게 軍役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족층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張維가 작성한 筓子是 당시 이들의 불만과 명분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士族이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천하에 아직 있지 않았던 부류라고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게 할 자도 드물고 군대에 가지 않아 전투에 참여시킬 자도 드물기만 합니다. 나라가 貧弱하게 되는 원인이 꼭 이 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名分을 유지하면서 國脈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이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士族에 대해서 백성은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臣이 일찍이 백성의 마음을 차라리

53) 金長生, 『沙溪先生遺稿』 권9, 「筓席問對」 丁卯三月初八日 “某曰 今番和事 雖出於爲宗社生靈之計 而其問斥和之議 不可無也 其言雖或過激 不可不優容矣”.

54) 『仁祖實錄』 권9, 인조 3년 7월 壬子(6일).

55) 『仁祖實錄』 권10, 인조 3년 12월 庚寅(16일).

56) 『仁祖實錄』 권13, 인조 4년 6월 丙子(5일) “號牌廳進追錄成冊 男丁總數一百二十三萬餘 其前所籍 乃一百三萬餘 合二百二十六萬餘云”.

57) 김성우, 2001, 앞의 책, 458쪽.

잃을지언정 사족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한 번 군역에 편입되지만 하면 鄕吏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좋은 결혼 상대자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역을 피하는 것이 마치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58)

위 사료에는 당시 사족들에게 기피된 군역의 위상이 잘 드러나 있다. 장유가 ‘名分을 유지하면서 國脈을 일으켜 세우는 것 [其維持名分, 扶植國脈]’이라고 말한 부분은 임진왜란 때 사족의 義兵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59) 관군이 붕괴되는 임진왜란 초기 士族의 지역적 명망을 기반으로 鄕民의 호응을 받으며 일어난 의병이 신속한 진격으로 보급선이 급속히 확장된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임진왜란의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60) 그러나, 사족들이 의병 봉기를 명분으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군역의 의무를 회피하였다는 비난 역시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61)

이태진은, 후일 良役變通論의 전개 과정에서 사족들이 임란 때의 의병 활동을 근거로 군역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자 한 논리

58) 張維, 『谿谷集』 권17, 「論軍籍擬上劄」.

59)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11월 辛卯(22일) “大司憲張維 執義姜碩期 持平金淸啓 曰…且我國士族奴婢 誠天下之所無 然而上下有統 尊卑有定 國家之所以維持者 寔賴於此 雖當兵亂之際 士族皆以名節自勵 絕無叛國投賊者 壬辰之亂 三南義旅 皆出於簪纓之緒 而咸鏡北路 素無世胄 故倡亂附賊 如鞠慶仁者 乃出於其中 由此觀之 士族之當扶植 亦已明矣”.

60) 李泰鎮, 「壬辰倭亂 극복의 사회적 動力」,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245~247쪽 참조.

61) 『宣祖實錄』 권30, 선조 25년 9월 戊寅(21일) “備邊司啓曰 昇平日久 紀律解弛 卒有戍事 無以收拾 爲武將守宰者 率皆遇賊輒北 有志者投袂奮義 糾合義旅 自爲一隊 揭名以義 爲諸道倡 故朝廷嘉之 凡所論賞 比他軍特優 至於名存軍簿 避亂逃散者 各自成群 厭避官家羈縻 見利則戰 遇強輒散 勝受上賞 敗不爲罪 不可使隊隊星散 無所統屬 朝廷方議可否”; 『宣祖實錄』 권35, 선조 26년 2월 甲辰(19일) “上曰 予意 提督之事 不爲非矣 避役者多投義兵云 然耶 德馨曰 江華一府 避亂避役 偷安之地 所謂義兵 各自號令 無所統令 故或強奸士女 或恣掠民財 無所不至 若此不已 則不無相聚爲盜之患也” 등.

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의병 활동과는 상반된 선택이자 오점이며, 이것이 조선후기 정규군 강화 노력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⁶²⁾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 전후 軍政의 문란과 義兵의 활약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모순 없이 이해한다. 하지만 軍籍에서 누락된 사족·농민·노비는 지역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의병은 사실 이러한 자원 가운데 일부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³⁾

이처럼 군정 문란의 여파로 사족과 노비가 빠진 상태에서 군역과 봉족의 의무는 고스란히 군적에 남아 있는 농민의 몫이 되었다.⁶⁴⁾ 후금 방어를 위해 인조대 강력하게 추진된 호패법 역시 정묘호란 발발 직후에 사족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철폐되고 말았다.⁶⁵⁾ 정묘·병자호란의 참패에 대하여 조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묘호란 직전 추진된 호패법이 결국 사족층의 광범위한 반발로 폐지된 점과 효종대 시작되어 영조대에야 종결된 良役變通 논의의 험난한 전개 과정을 보면,⁶⁶⁾ 후금(청)에 대항할 수 있는 정예 병력의 확보와 유지가 집권 세력의 의지만으로는 단 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62) 李成茂 편, 제2차 집담회 「임진왜란을 이겨낸 리더십」,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459쪽.

63) 李成茂 편, 제2차 집담회 「임진왜란을 이겨낸 리더십」 중 오종록의 발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312~313쪽;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4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14, 31~40쪽 참조.

64) 허남린, 「모순과 갈등의 인정-선조조를 통해 본 유교정치의 재정구조-」,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342~343쪽.

65)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丁亥(19일).

66) 鄭萬祚,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32-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2006 참조.

3. 軍糧의 공급

古수를 막론하고 군량을 포함한 군수물자의 원활한 조달과 보급은 전투 이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⁶⁷⁾ 임진왜란의 제반 軍務를 총 지휘했던 柳成龍은 전쟁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糧餉, 軍兵, 城池, 器機의 順으로 정리하였으며,⁶⁸⁾ 따라서 군사비도 군량의 조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출되고 있었다.⁶⁹⁾ 더욱이 실제 전투에서는 확보된 군량이 행군 중이거나 전투 중인 병력에게 適期에 운송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도로 발달과 수레 이용이 부진하였던 조선의 경우 군량의 조달과 운반은 백성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 주는 苦役이었다.⁷⁰⁾ 明·日과 달리 당시 조선에는 군수 물자의 조달에 상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이 不在하였다.⁷¹⁾

광해군대 명의 지원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던 명분 가운데 하나도 다름 아닌 군량 공급의 문제였다.⁷²⁾ 국경 밖 장거리 원정이라는 조건은 군량의 조달과 운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

67) 孫武, 『孫子兵法』 「作戰篇」, “善用兵者 役不再籍 糧不三載…取用於國 因糧於敵 故軍食可足也…國之貧於師者遠輸 遠輸則百姓貧…故智將務食於敵”.

68) 柳成龍, 『懲毖錄』 권16, 軍門籌錄 丙申(1596)六月二十日 「移京畿巡察使文」, “然其戰守大總 不過四條 一曰糧餉 二曰軍兵 三曰城池 四曰器機”.

69) 柳成龍, 『懲毖錄』 권16, 軍門籌錄 丙申(1596)六月十四日 「移戶曹文」, “乙未十月二十日道啓稱內 今日戰守之計 不過糧餉軍兵城池器械數事而已 然必須先備糧餉 然後他事次第可舉”.

70) 『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丙戌(2일); 『宣祖實錄』 권51, 선조 27년 5월 甲辰(27일); 『宣祖實錄』 권75, 선조 29년 5월 己巳(3일) 등.

71)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同朋舍, 1972, 123~124쪽;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립』 29, 수선사학회, 2008, 247~249쪽 참조.

72) 『光海君日記』 권128, 광해군 10년 5월 壬辰(5일).

다.⁷³⁾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적중하여 심하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은 군량과 말모이인 乾草를 적절히 보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급의 막강한 기병을 맞이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다.⁷⁴⁾

『光海君日記』의 撰者는 이 모든 책임을 군량 운송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은 평안 감사 박엽과 管餉使 尹守謙에게 돌리고 있지만,⁷⁵⁾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군량 운송 시스템의 未備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은 부족한 군량의 확보와 운반을 위해 의병을 독려하는 한편⁷⁶⁾, 納粟 정책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중간 관리의 횡령과 운송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 대가로 補官·免役·免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분 질서의 혼란과 國役 자원의 감소만 초래하였다는 비난만 초래하였다.⁷⁷⁾ 요컨대 납속은 군량의 부족과 운송 체계의 未備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아니었다. 屯田 역시 부족한 군량을 조달하는 데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私占 등 운영상의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⁷⁸⁾ 결국 군량의 공급 역시 養兵과 마찬가지로 사회 체제 전반의 생산력 및 행정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국가 재

73) 『光海君日記』 권130, 광해군 10년 7월 丙申(10일) “調度使尹守謙狀啓…大概軍兵在我境內 則雖左枝右梧 抽東補西 庶有繼餉之路 如渡遼陽 則千里險路運轉極難 百爾思之未得善策”.

74) 『光海君日記』 권137, 광해군 11년 2월 辛巳(27일); 『光海君日記』 권138, 광해군 11년 3월 乙酉(2일).

75) 『光海君日記』 권137, 광해군 11년 2월 癸未(29일) “元帥兵以糧運不到 留牛毛寨 劉提督亦屯兵不進 先遣喬一琦前進【其時 管餉使尹守謙追遙江上 無意督運 軍法若行 宜正乏興之律 而適全師裕沒 竟無言其罪者】”; 『光海君日記』 권138, 광해군 11년 3월 辛卯(8일).

76)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戊寅(23일) “上曰 各處義兵 無遺括出 使之輪轉糧餉 以供天兵 違令者 其將依軍令施行”.

77) 『宣祖實錄』 권50, 선조 27년 4월 乙卯(7일); 田炳喆, 「壬辰倭亂期 納粟政策」, 『龍巖車文變教授 華甲紀念論叢 朝鮮神代史研究』, 신서원, 1989, 535~531쪽 참조.

78) 李章熙, 「屯田經營의 實態」,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277~283쪽 참조.

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었다.

후금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광해군대(재위: 1608~1623)와 인조대(재위: 1608~1649)는 임진왜란의 충격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량의 원활한 조달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웠다.⁷⁹⁾ 임진왜란 이전 150~170만여 결 사이를 오고 가던 전국의 田結은 종전후 30만결로 급감했으며,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130만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6세기 말 1,000만여 명을 상회하였던 전체 인구는 종전 이후 700만 명선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동아시아 세계를 휩쓴 小氷期(약 1500~1750년)의 영향이었다. 소빙기로 인하여 촉발된 자연재해는 旱災·水災·蟲災·기근·전염병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시 收稅地 회복과 인구 증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兵農一致의 軍制를 基幹으로 운영하였던 조선은 정예 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원활한 공급에 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세 軸은 田稅, 徭役, 貢物이었다. 이 가운데 군량 조달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稅目은 田稅였다.⁸⁰⁾ 전쟁 이전 30만여 石 규모의 田稅 수입은 임진왜란 이후 급감하였다.⁸¹⁾ 이후 광해군~인조대에는 ‘국가의 1년 세입이 비용을 감

79) 임진왜란의 피해와 소빙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李泰鎮, IV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2002, 302~338쪽; 『새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까치, 2012, 387~391쪽 참조.

80) 金鎔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韓國史論』,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283~285쪽 참조.

81)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 8월 辛卯(10일) “備邊司啓曰…我國全盛之時 一年稅入 兩界外 六道米豆粟并 歲僅二三四萬石 除豆粟外 不滿十四萬石”; 柳馨遠, 『礪溪隨錄』 권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 “平時賦稅米黃豆并三十餘萬石【以十斗斛計之 則爲四十五萬餘斛】除西北兩界留本道外六道稅 二十六萬餘石”; 『宣祖實錄』 권200, 선조 39년 6월 壬戌(25일) “國家經費 專倚於稅入 有國之務 莫急於此 近年一歲稅入 僅至四萬餘石 而一歲經費 不下七萬餘石 不足之數 殆居其半 不得已每年有收米之舉 艱難支保 所謂收米者 乃是規外之賦”; 김옥근은 임진왜란 이전

당하지 못한다.’는 類의 기록이 實錄에 빈번하게 나타난다.⁸²⁾ 광해군 1년(1609)에 국가 경비는 7만여 석 정도였으나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한 실정이었다.⁸³⁾ 인조반정 초기의 국가 재정 역시 經費는 11만 석이지만 稅收는 10만 석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⁸⁴⁾

여기에 광해군대 궁궐 영건에 소모된 비용, 明 使臣의 접대에 소모된 銀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오항녕은 당시 궁궐 공사에는 국가 재정의 15~25%가 소모되었다고 주장한다.⁸⁵⁾ 한명기는 광해군대 명 사신이 거두어 간 은의 수량을 최소 14만 兩 이상으로 추산하였다.⁸⁶⁾ 조정은 田結에 임시적 부가세인 結

전세 수입이 30만여 석이라고 본 유형원의 기록을 과소평가된 것이라 주장하며, 米 43만 5천 석으로 補正하였다(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7쪽).

82) 『光海君日記』 권78, 광해군 6년 5월 甲子(13일) “戶曹啓曰…一年稅入, 既不能供一年之用, 則如非加賦於民, 萬無繼用之路”; 『光海君日記』 권109, 광해군 8년 11월 甲午(27일) “傳曰 一年稅入 不能周一年經費 此未必不由於田野不闢 不善耕墾 而然也”;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9월 丙子(19일) “戶曹回啓曰…大抵一年稅入 未能支一年之用 不足之數 至於二萬餘石”; 『仁祖實錄』 권22, 인조 8년 4월 丙子(27일) “戶曹啓曰 一年稅入 不足以應一年之用 而今此興師之舉 又出於意外 繼餉之策 不可不預講”.

83) 『光海君日記』 권16, 광해군 1년 5월 己酉(29일) “司諫院啓曰…今者國家經費七萬餘石 而稅入則不過四萬餘石 以此該曹拮据湊合 猶不補所缺之數”; 여기서 제시된 국가 경비는 액수로 보아 호조 재정의 지출 총액을 가리키는 것 같다.

84)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甲申(25일) “上又曰 今之大事有二 而皆無實矣 以恤民言之 則實思未孚 以討賊言之 則軍政無形 極可寒心 且措置糧餉 尤爲急務 戶曹計一年經費 所餘幾許 戶曹判書李曙曰 一年經費十一萬石 所奉十萬石 經費猶且不足 有何餘儲 以補軍需 上曰 辦糧之難 甚於抄軍 軍可以臨急抄發 糧餉則決難猝備 而時無見糧 極可慮也”.

85) 오항녕, 『광해군-그 위험한 거울』, 너머북스, 2012, 294쪽.

86) 한명기, 1999, 앞의 책, 222쪽; 당시 銀1兩=米1石의 교환 비율을 대입하면 米 14만 석 이상의 가치로 환산된다(『承政院日記』 6책, 인조 3년 6월 13일 己丑 “翼曰 今番所費 銀子十萬餘兩 其他贈遺合計 則幾至二十餘萬兩 折作軍糧 可買二十餘萬石矣”; 『孝宗實錄』 권15, 효종 6년 12월 癸亥(13일) “至是領敦寧府事金瑄請更定科條·錢無定價 隨時低昂 以銀折定其價 銀一兩直錢六百文 米布視銀直高下 米一升直錢四文 銀一兩 直米一石 且申嚴毀錢之禁”).

布를 수시로 부가하거나 調度御史를 전국에 보내 각종 물자를 징발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민심의 악화 또한 피할 수 없었다.⁸⁷⁾ 이러한 상황은 모두 조선군의 養兵 및 軍糧 공급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毛文龍의 陣營과 遼東 難民에 대한 식량 지원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⁸⁸⁾ 조선이 毛營에 공급한 식량은 인조 4년(1626)에만 15만 석에 달했는데, 山東으로부터 군량 공급이 중단되자 모영의 軍民은 대부분의 식량을 조선에 의지하고자 하는 실정이었다.⁸⁹⁾ 인조 5년(1627)에 이르면 毛營에 보내는 양곡이 1년 국가 경비(=호조 재정만을 의미)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였다.⁹⁰⁾ 인조 7년(1629) 10월 管餉使 成俊壽의 보고에 의하면 毛營에 공급한 미곡의 총량은 26만 8천 7백여 석에 달했다.⁹¹⁾

게다가 毛營의 군민은 조선의 거점에 비축된 군량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서 서북 지방의 民生과 軍政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⁹²⁾ 조선은 모영에 공급하는 식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87) 17세기 초·중엽 결포제 시행에 대해서는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73~181쪽 참조; 조도어사의 作弊은 한명기, 1999, 앞의 책, 320~322쪽 참조.

88)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乙巳(6일) “備邊司啓曰…且近緣山東糧餉不來 毛營數十萬石 專恃仰哺於本國 今年支給之數 已過十五萬石 決無可支之勢 須另議繼餉之策 以紓本國物力之意 竝及於回揭中似當”.

89)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乙巳(6일) “備邊司啓曰…且近緣山東糧餉不來 毛營數十萬石 專恃仰哺於本國 今年支給之數 已過十五萬石 決無可支之勢 須另議繼餉之策 以紓本國物力之意 竝及於回揭中似當”.

90) 『仁祖實錄』 권16, 인조 5년 4월 乙卯(19일) “上曰 頒祿散料之外 無他浮費 而公私之竭 至於此極 未知其故也 毛兵糧 一結二斗 豈非大段徭役 而毛兵未撤之前 亦難罷之矣 金蓋國曰 毛營所送之米 卽國用三分之一也”.

91) 『仁祖實錄』 권21, 인조 7년 10월 甲戌(23일)

92) 한명기, 1999, 앞의 책, 378~384쪽;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명청사연구회, 2005, 153~163쪽 참조.

광해군대부터는 임시적 성격의 부가세인 西糧을 수취해야만 하였다. 서량은 毛糧·唐糧이라고도 하였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결당 7斗를 兩湖를 포함한 三南 지역에서는 결당 1斗 5升의 서량을 수취하였다.⁹³⁾ 모문룡은 조선에 터무니없는 가격의 物貨를 強賣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⁹⁴⁾ 明使가 징색하는 銀을 다름 아닌 모영에서 변통하는 상황은 당시 인조대 초반 조선이 처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⁹⁵⁾ ‘我國의 禍는 奴[=後金]가 아니라, 毛(文龍)에게 있다.’는 요지의 仁祖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⁹⁶⁾

이처럼 軍備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재정의 불안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軍糧의 확보였다.⁹⁷⁾ 앞서 언급한 정예 병력의 증강과 확보는 군량의 원활한 조달이 선행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인조반정 후에도 養兵과 관련하여 군량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실록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⁹⁸⁾ 정묘호란 당시 조선군이 군량의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주목된다. 후금군에 비해 확실한 우

93) 權內鉉, 2002a, 앞의 논문, 180~182쪽 참조.

94) 『仁祖實錄』 권10, 인조 3년 9월 癸丑(8일) “戶曹啓曰 毛營貸銀未償之數 尙有五千餘兩 長爲負債之人 誠有所未安 都督前後發賣雜貨之價 未准還償者甚多 此則彼所勒定出給之物也 縱未赴卽充納 猶有可訶 而今此貸銀 則自我取來 若不速償 彼不無執言恐嚇之弊”.

95) 위의 각주.

96) 『承政院日記』 16冊, 仁祖 4年 10月 20日 己未 “我國之憂, 在於毛而不在於奴也, 奴之憂緩, 毛之憂急矣.”

97) 유성룡의 「時務劄子」에 의하면 조선시대 1만 병사의 1년 배급량은 4만 4천 石 정도였다(柳成龍, 『芹曝集』, 甲午(1594)四月 「陳時務劄」 “蓋一萬名一年之糧 內四萬四千石”). 이 비율로 환산하면, 5만 병사를 常備 전력으로 유지할 경우 소모되는 군량만 22만 석에 달했다. 병사의 家率들에게 생활비로 지급되어야 할 부가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98)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6월 辛未(12일);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12월 壬寅(22일) 등; 병자호란 이전 인조대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金鎔坤, 1981, 앞의 논문, 156~164쪽 참조.

위를 점하지 못했던 각 방어처의 부족한 병력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이에 대한 군량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인조실록』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한강과 임진강 방어에 동원되었던 병력은 군량의 부족으로 전투 이전에 이미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⁹⁹⁾ 강화도의 경우 군량의 부족으로 이미 집결하였던 1만의 병력 중 御營軍과 下三道의 사냥 포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다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¹⁰⁰⁾ 오히려 원정 온 후금군의 주력은 군량과 풀이 다 떨어졌다고 스스로 말하였지만,¹⁰¹⁾ 크게 굶주리는 기색없이 한달 이상 더 주둔하다가, 丁卯和約이 성립된 3월 3일 이후에야 철군하였다. 후금군의 장기 주둔이 가능했던 데에는 城의 점령으로 조선에서 획득한 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정 경험이 풍부한 후금군의 병참·보급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 사례는 軍備 증강과 民生 안정이란 과제가 상호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인조대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조는 丁卯胡亂 발발 이후 戰勢가 급격히 기울자 강화도로의 피난을 결심한다. 인조반정 이후 都城을 비우는 쉽지 않은 조치가 이괄의 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면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哀痛의 敎書가 전국에 반포되었다. 張維의 손을 빌어 작성한 이 교서는 국왕의 失政을 자책하며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므로, 이 교서를 통해 집권세력의 정국 인식뿐만 아니라 당시 士族과 백성의 불만이 무엇인지 거꾸로 추적해 볼 수 있다.

99)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己未(22일).

10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3월 乙未(28일).

101)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癸卯(6일) “大金國二王府 傳諭張尙書 爾稱講和可差官速來 若不願講和 將我二次發去金人 速發回來 我在野外下營 一百里內糧芻撤盡 且無房屋 如此艱難辛苦, 備可想了”.

인조는 이 교서에서 자신이 민심을 잃어버린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거론하였다. 첫 번째, 즉위 직후 시행한 개혁 조치의 과실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연이은 告變과 옥사로 무고하게 연루된 자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모두 군사 문제와 연관된 失政에 대한 자신의 所懷를 진술하였다. 다음은 이때 인조가 반포한 교서의 일부이다.

서쪽 변경에 오랜 동안 군사를 주둔시키고 모문룡의 진영에서 군량을 독촉하는 바람에, 길 떠나는 사람은 짐을 싸고 집에 있는 사람은 보낼 준비를 하였다. 사람들의 머리수에 따라 조세를 거두어들이니, 백성들은 곤궁에 빠지고 국고는 탕진되어 안과 밖이 소동을 겪었다. 비록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내가 민심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일이다. 호패법은 본래 도망갔거나 죽은 자들의 缺員을 보충하고 隣族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백 년 동안이나 폐지되었던 법을 갑자기 거행하여 술한 놀고먹는 사람을 강제로 단속하였으며 일을 추진하는 데 급급하여 점진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구속하기를 지나치게 엄정하게 하고 독촉하기를 너무 치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불편한 점을 많이 말하였으나, 나의 독단으로 [호패법을: 인용자] 중지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못사람들의 분노를 샀으니 누가 나의 본심을 헤아리겠는가? 儒生의 考講은 실제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라 古典에 의거한 일이었으나, 역시 時宜에 맞지 않았다. 뜻은 비록 장려에 있었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그 가혹하고 각박함을 의심하였다. 이것이 내가 민심을 잃어버린 네 번째 일이다. ...이미 명령을 내려 謫道의 御使를 소환하고 호패법을 일체 폐지토록 하였으며 작성한 장부들을 불태우게 하였다. 그리고 전후에 걸쳐서 호패에 대한 일로 연좌되어 갇히거나 徒配된 자들 모두를 사면시켰다. 이 한 장의 종이에 나의 정성을 담아 각처에 널리 알리노니 각기 나의 이 마음을 살피서 忠義心을 분발하여 몸을 떨쳐 일어나라! 그리하여 의로운 군대[義旅]를 소집하여 行在所로 달려오기도 하고, 양식을 끌어 모아 軍前으로 수송해 오기도 하는 등 각자 형편과 힘이 닿는 대로 分義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극진히 하도록 하라!¹⁰²⁾

102) 張維, 『谿谷集』 권2, 教書「八道宣諭教書」; 『仁祖實錄』 권15, 仁祖 5년 1월 丁亥(19일).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정묘호란 당시 인조정권이 인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후금에 대한 방어 소홀’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집권세력은 후금과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됨에 따라 군량 확보를 위한 增稅를 시행하고, 불법으로 누락된 軍役 자원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이하였던 것이다.¹⁰³⁾ 군역이 이미 苦役化·賤役化되어버린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후자의 조치는 특히 사족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¹⁰⁴⁾

이 교서의 말미에서, 인조는 호패의 파기와 새로이 작성된 호적대장[成籍]의 소각을 명하였다. 이것은 군비 증강과 민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⁰⁵⁾ 적군의 침입으로 도성까지 버리고 피난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군비 증강을 위한 호패법 시행은 민심의 불만을 달래고 사족층의 의병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검토한 여러 사실과 정황은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이 무리한 養兵과 군량 조달을 감당할 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¹⁰⁶⁾

103) 『承政院日記』 24책, 인조 7년 2월 27일 癸丑 “伯曾曰 光海時 田結之役甚重 民不聊生 近日則號牌軍籍 民心騷屑矣”; 『昭顯分朝日記』 4책, 天啓 七年 三月 十七日 甲申 晴 “溫陽幼學趙相馬上疏…今日之禍 不作於今日 而其階也 有自失我民心 一京大同也 二戶牌也 三軍籍也 四刑戮也 五賦役也” ‘금일지화’는 정묘호란의 패전과 이로 인한 후금과의 화친을 가리킨다.

104) 『昭顯分朝日記』 1책, 天啓 七年 正月 二十六日 甲午 晴 “水原府內 人民數十 呼訴於道左 請焚戶牌成冊 世子駐馬下令曰 已盡焚燒 勿爲疑慮”; 『昭顯分朝日記』 2책, 天啓 七年 二月 十一日 戊申 晴; 『昭顯分朝日記』 4책, 天啓 七年 三月 十七日 甲申 晴 등.

105) 군비 증강과 관련하여 일반 백성의 불만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 7년(1629) 李忠景, 韓成吉 등은 서북 일대에서 明火賊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하였다(『仁祖實錄』 권20, 인조 7년 2월 癸丑(27일)). 이들이 선포한 개혁안인 「개국대전」에는 良人의 군역을 가볍게 하고 士族에게 군역을 부담하게 하며, 兵使와 수군 및 훈련도감의 혁파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金鍾洙,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168~171쪽 참조).

106) 필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栗谷 李珣가 제기했다고 알려진 ‘十萬養兵說’의 비현

군량의 조달을 포함한 국방력 확대가 국가 재정의 확대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은 이미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대부터 확실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는데,¹⁰⁷⁾ 선조도 군사 문제가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지적하였다.¹⁰⁸⁾ 선조의 발언은 군사력의 강화라는 목적이 조선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존의 관행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 軍政의 개혁은 이미 군사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조선후기의 군사 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1/4)이 다른 서구 국가들은 물론이요 중국과 비교해 볼 때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한 경제사학자의 해석은 매우 시사적이다.¹⁰⁹⁾ 이 해석의 論者는 이러한 방식의 재정 운영은 조공 책봉 체제 아래 중국과의 군사 동맹이 존재하여 가능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의 서구 국가는 무역 활성화, 상공업 증진, 민간 금융(=國債 발행)의 제도적 보장, 식민지 확보 등에 따른 稅源과 재정의 확대라는 정책을 통하여 막대한 軍備 지출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

실성을 비판한 선행 연구로는 李載浩, 『韓國史의 批正-李載浩史評集-』, 도서출판 宇石, 1985, 220~22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107) 『宣祖實錄』 권97, 선조 31년 2월 庚午(15일) “史臣曰 我國土地磽薄 一畝所產不及中原十分之二 桑田絕無 一國養蠶 不滿中原萬分之一 以不敷之穀粟 貨至鮮之布帛 而又無中原銀山銅穴之流泉 國計安得而不匱 生民安得而不乏 雖在平時 尚然 況此兵興之時乎”.
- 108) 『宣祖實錄』 권191, 선조 38년 9월 己亥(28일) “上曰…且倭賊則雖以漢唐之盛亦難當也 至於北賊 一良將足矣 而如是難之 誠可痛也 蓋蓄積多而後 可以有爲 古人云 富國強兵 雖不可主於富強 必有蓄積然後 事可成矣 天下安有如此貧國 恰似閭閻窮乏之家 營一鎮堡 亦甚不易”.
- 109) 金載昊, 「조선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기초: 규모, 구성, 원천-『賦役實摺』의 분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235~236쪽 참조.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볼 때, 국방 태세의 해이나 金自點, 金慶徵 등 일부 지휘관의 무능과 비겁만을 병자호란의 주요 敗因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대 초반을 중심으로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공급-을 살펴본 필자는 광해군대와의 질·양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었다.¹¹⁰⁾ 오히려, 후금(청)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을 단 기간에 증강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의지와는 별도로 당대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至難한 과제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軍役 자원의 확보, 정예병의 확보와 육성, 공략이 어려운 견고한 요새의 구축, 軍糧과 火砲의 충분한 비축, 軍馬의 육성 등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어느 누구나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속에서 마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강경론을 주장한 척화론자조차도 戰力의 열세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軍備의 증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富裕하고 勢道있는 사람부터 군사로 선발한다면 십수만 명의 精兵을 쉽게 양성할 수 있다는 尹煌의 주장이나¹¹¹⁾ 국왕이 開城에 進駐하면 군사의 士氣가 올라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鄭蘊의 주장¹¹²⁾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空理空談에 불과한 것이었다.¹¹³⁾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희의 양병론은 당시의 정

110) 축성 및 화약병기 조달과 관련하여, 17세기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2, 앞의 논문 참조.

111)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8월 辛卯(20일) “四方選兵, 亦用此道, 先發豪門盛族而後, 及小民則舉國元元, 風動於下, 孰敢有怨咨之心, 孰敢生規避之意哉 如是則十數萬精兵, 可不勞而得也”.

112)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庚申(15일).

113) 일찍이 김용흠은 保民과 養兵, 安民과 禦敵이 상호 모순된 성격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척화파 변통론자(=국방강화론자)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치·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부유하고 세도있는 사람부터 군역에 充定한다는 제안의 전제 자체가 시행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양병론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핵심적 문제를 국왕에게 미룬 채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국방 개혁을 위한 중요한 현안들은 조선 사회의 전체적 구조와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였다. 사실 양반을 군대에 편입시키기보다, 時王의 나라인 명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경전적인 근거도 부족한 세습 노비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방 강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사회를 구성하는 신분제 개혁과 연관된 복잡하고 구조적인 사안이었다.

다음에 제시된 윤희의 劄子에 대한 비변사의 回啓는 養兵과 民心이 충돌하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城也, 兵器, 足食, 足兵의 허다한 직무는 戰守를 위한 큰일이니 어찌 잠시인들 마음속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둘러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民力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 內亂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심입니다. 지금 만약 宗室 이하 諛班의 각종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시민과 公私賤에 이르기까지 병사를 만든다면, 군대의 수는 많이 얻을지라도 반드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무리들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한다면 양떼를 몰아서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¹¹⁴⁾

서구 절대주의 왕정의 성립과 근대 국가의 형성·발전에 수많은 전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金容欽, 2006, 앞의 책, 126~127쪽).

114)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8월 辛卯(20일).

軍事革命(Military Revolution)은 16~17세기 무렵 유럽에서 있었던 군사 기술 및 전략의 획기적인 변혁을 일컫는 말로서,¹¹⁵⁾ 이 시기 전술과 병기의 발전, 그리고 이에 수반된 전쟁 수행 방식의 전환이 서구 근대각국의 근본적이고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이론이다. 중국의 春秋戰國時代와 일본의 戰國時代의 혁명적 체제 변화 역시 전쟁과 내란의 지속적인 압력 아래 달성된 것이었다.¹¹⁶⁾ 이 과정에 수반된 수많은 개혁과 발전은 구체제하 여러 집단의 격렬한 반발과 희생 속에 달성된 고통스런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대 조선의 군비 확충이라는 사안은 집권 세력의 의지에 좌우되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근본적 전환과 직결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 과제였다는 결론에 조심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 비교사적 견지에서 좀 더 과감하게 말해 보자면, 임진왜란(7년, 실제 전투 기간은 2년 남짓), 사르후 전투(1개월), 정묘·병자호란(도합 5개월 정도)이란 전쟁이 조선 사회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기에 너무나 짧았던 것은 아니었을까?¹¹⁷⁾

일찍이 이와 유사한 인식을 토대로, 필자는 胡亂期の 斥和論이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종속 의식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오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明이란 記標(signifiant)로 상징되는 中華 문명의 가치를 당대 조선의 君·臣 모두가 공유한 데서 비

115)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73~76쪽 참조.

116)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 과정과 이에 수반된 사회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구태훈, 2008, 앞의 논문 참조.

117) 최근 국내에 번역된 두 책은 근대 이후 동·서양 군사력 격차의 발생 원인을 집권 세력의 賢否나 대응보다 역사적 경로의 相異, 정치·경제·지리·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 구조적 요인에 더 주목하여 설명한다(필립 T. 호프먼, 『정복의 조건-유럽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손에 넣었는가』, 책과함께, 2016; 아자 가트,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⁸⁾ 당시 조선의 척화론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였던 것은 명나라의 問罪 또는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對明義理의 포기가 상징하는 윤리와 문명의 붕괴였으며, 이것이 초래하게 될 天下 사람들과 後世의 비난이었다.¹¹⁹⁾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대립은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인류와 짐승, 문명과 야만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만, 우리는 ‘對明義理의 固守를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청과 和親할 수 없다.’ 類의 주장을 제기한 척화론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실마리를 잡게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1, 게재확정일 : 2018. 11. 20)

주제어 : 병자호란, 군사력, 병력, 군량

118) 조선이 자국 戰力의 열세를 인지하고 명군의 구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朝野에서 광범위하게 斥和論이 제기되고 지지받았던 현상을 ‘두 개의 對明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試論적으로 설명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특정 국가로서 明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中華라는 보편 문명을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다. 선행 연구의 필자는 척화론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보았다(許泰玖,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66~171쪽).

119)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2월 辛卯(16일) “掌令洪翼漢上疏曰…我國素以禮義聞天下 稱之以小中華 而列聖相承 事大一心 恪且勤矣 今乃服事胡虜 偷安僅存 縱延晷刻 其於祖宗何 其於天下何 其於後世何…苟欲稱天子位大位 唯當自帝其國 號令其俗 誰復禁之 而必欲稟問於我而後 行帝事哉 其所以渝盟開釁嚇我藉我者明矣 而亦見其要我立言 將以稱於天下曰 朝鮮尊我爲天子 殿下何面目 立天下乎” 등.

〈참 고 문 헌〉

1. 사료

- 孔子(B.C. 551~B.C. 479), 『論語』(成百曉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1990)
- 孫武(B.C.535?~?), 『孫子兵法』(유동환譯, 흥익출판사, 2005)
- 金長生(1548~1631), 『沙溪先生遺稿』(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柳成龍(1542~1607), 『西厓全書』(西厓先生紀念事業會, 1991)
- 李貴(1557~1633), 『李忠定公章疏』(李秉九 編, 서울: 寶蓮閣, 1987 cf. 題名은 『延平遺事』)
- 李民奩(1573~1649), 『紫巖集』(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張維(1587~1638), 『谿谷集』(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柳馨遠(1622~1673), 『磻窩叢錄』(明文堂, 1991)
- 『高麗分朝日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일기역주팀 국역본, 민속원, 2008)
-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do>)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清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c/main.do>)

2. 단행본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和 變通論-』, 혜안, 2006.
- 柳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 오향녕, 『광해군-그 위험한 겨울-』, 너머북스, 2012.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李成茂 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 李章熙,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 李載浩, 『韓國史의 批正-李載浩史評集-』, 도서출판 宇石, 1985.

李泰鎮,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韓國研究院, 1985.
_____,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_____, 『新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까치, 201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許泰玖,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마르틴 반 크레펠트著·유보형譯,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필립 T. 호프먼著·이재만譯, 『정복의 조건-유럽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손
에 넣었는가』, 책과함께, 2016.
아자 가트著·오숙은·이재만譯,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明と清の決戰』, 原書房, 1972(대한민국 육군대학譯,
「機動戰-사르흐전」, 『軍事評論』 337호 부록, 1998).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同朋舍, 1972.

3. 연구논문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림』 29, 수선사
학회(2008). <http://uci.or.kr/G704-001587.2008..29.006>
權乃鉉, “17세기 전반 平安道の 軍糧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0, 조선시대
사학회(2002a). <http://uci.or.kr/G704-000303.2002..20.006>
_____,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韓國史學報』 13, 고려
사학회, (2002b). <http://uci.or.kr/G704-000690.2002.13..011>
金鎔申,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韓國史論』 7, 국사편찬위원회(1980).
_____,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宣祖~顯宗 年間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1981).
金載昊, “조선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기초: 규모, 구성, 원천-『賦役實摺』의
분석을 中心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6, 조선시대사학회(2013).
<http://uci.or.kr/G704-000303.2013..66.001>
金鍾洙,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국사
학과(1990).

- 盧永九, “인조초~丙子胡亂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韓國史學報』 41, 고려사학회(2010). <http://uci.or.kr/G704-000690.2010..41.006>
- _____, 제2절 1편 “대후금 방어전략과 이괄의 난”, 『한국군사사⑦-조선 후기 I』, 육군본부(2012).
- 심승구, “조선 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3, 조선시대사학회(2002).
<http://uci.or.kr/G704-000303.2002..23.001>
-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2008).
- 이영훈, “한국사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2007).
- 李泰鎮, 제2장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1977).
- _____, IV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2002).
-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朝鮮時代史學報』 81, 조선시대사학회(2017).
<https://doi.org/10.21568/cdha.2017.06.81.49>
- 田炳喆, “壬辰倭亂期 納粟政策”, 『龍巖車文燮教授 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1989).
- 鄭萬祚,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32-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2006).
-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명청사연구회(2005).
- 崔孝弼, “仁祖代의 國防施策”, 『東國史學』 19·20, 동국사학회(1986).
-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全北史學』 48, 전북사학회(2016). <http://uci.or.kr/G704-002047.2016..48.002>
- 허남린, “모순과 갈등의 인정-선조조를 통해 본 유교정치의 재구성조-”,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2016).
-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2012).

<http://uci.or.kr/G704-000303>, 2012., 61.002

_____, “金誠一 招諭 活動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4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2014).

<http://uci.or.kr/G704-001230>, 2014., 41.004

<Abstract>

Attempts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of Joseon before Byeongja Horan(丙子胡亂) and its limitations: Centered on securing troops and supplying military provis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Injo's reign.

Huh, Tae-koo

This paper examines the attempt to strengthen military power of Joseon and its limitations before Byeongja Horan. In particular, I focused on the securing of troops and the supply of military provis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Injo's reign. Through this, this paper sought to find out why the people of that age could not achieve successful armaments expan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fully aware of the weakness of the war effort.

Insufficient number of trained soldiers, lack of provisions to support the troops were all issues that had been constantly reminded as weak spots of the Joseon army since the days of the Japanese invasion. Yet addressing such problems was not an easy job, due to financial problems and shortage of manpower. Only a series of full-scale reforms conducted on a society-wide basis would have brought difference to the situation, yet the Household Recognition Tag law(號牌擧去) and other reforms were being obstructed, as they were facing a strong political objection. Reinforcing the military and stabilizing the public lives were in nature contradictory causes, and such inner conflicts were being worsened by the so-called Mini Ice-age(小氷期) that hit the East Asia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In this situation, the enormous

silver that was consumed to purchase favorable Ming envoys and the supply of provisions to Mao Wen-lung(毛文龍)'s troops stationed in Gado Island(椴島) put a considerable burden on Joseon's national finances. Fundamentally, the rapid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forces at that time was difficult to coexist with the stability of the people and the long accumulation of financial resources.

Key words : Byeongja Horan(丙子胡亂), the military power, troops, provisions